

의안번호	2207599
의 퇴 인	복기왕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4.
추 계 번 호	25B0338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)	항공·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국무총리 소속으로</u>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 ※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 (위원회의 구성)	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, 비상임위원은 <u>국무총리가</u> 위촉함(제2항) ※ 비상임위원 위촉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국무총리는 희생자 유가족(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를 말한다) 단체가 추천하고 제7조 각 호에 준하는 자격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<u>1인</u> 을 위원회 참관인으로 위촉하여야 함(제4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 (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 (위원회의 구성)	

2. 상세 사유

-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 등 변경(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6조 제2항)
-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,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던 비상임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며, 희생자 유가족 단체가 추천한 자 1인을 위원회 참관인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임
 -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 1인(비상임), 상임위원 2인(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및 철도국장), 비상임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¹⁾ 현행법 제16조²⁾에 따라 사무국을 두고 있음

[표 1]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구성현황



- 1)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.
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,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.
 ③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6조(직무)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는 「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 제4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,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.
 ②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.
- 2)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사무국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.
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·사고조사관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한다.
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.
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개정안 중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변경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없어, 현 시점에서는 위원 등의 소속 및 직급 변동 여부를 알 수 없으나, 현행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상임위원의 인원 및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그에 따라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」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겸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상임위원 정수 및 직급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

[표 2] 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현행 규정

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.</u>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,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. ③ <u>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6조(직무)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는 「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 제4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, <u>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.</u> ② <u>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.</u>

자료: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사이트 검색
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향후 변경될 수 있는 상임위원의 인원 및 직급을 알 수 없고, 현행과 같이 현직 공무원이 겸직할지 여부 등 근무 형태를 알 수 없어 그에 따른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·관리비·공사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개정안의 참관인 1인 위촉과 관련하여 위원회 참관에 대한 수당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으나, 현재 위원회 위촉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 단가(15만원+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)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위원회(분과위) 개최 횟수가 평균적으로 연 5~6회임을 고려하면 현재 위원회 사무국에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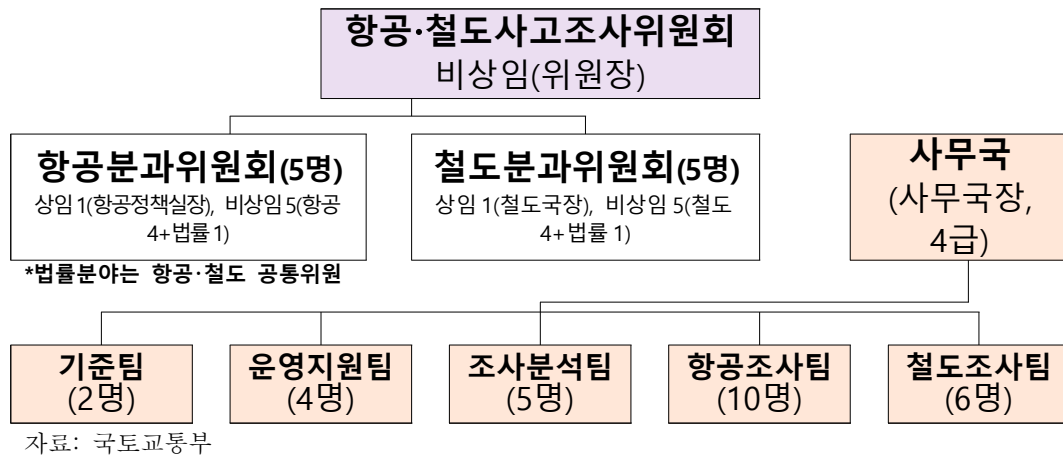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현황

□ 위원회 구성현황



□ 사무국 구성현황

○ 정원 29명 / 현원 28명

계	일반직(11/12)			전문임기제(사조조사관)		공무직 3명
	4급	5급	6급 이하	가급	나급	
29/28 (정원/현원)	1/1	5/6	5/5	3/3	12/10	3/3 (영어자문관, 청소원, 시설관리원)

주: 조사관은 '전문임기제' 공무원으로 정원은 별도정원으로 확보, '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'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경력경쟁공개채용을 거쳐 임용(1년단위 계약, 사조위 사무국 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, 최대 5년)

자료: 국토교통부

□ 위원회 사무국 소재지

- 세종시 가름로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층(민간 건물 임차 사용)
- 위원회 사무국과 별도로 시험분석센터 및 잔해보관시설은 김포공항 내 국립항공박물관 맞은편, 서항청 토지 및 건물에 위치

[참고자료 2] 위원회 사무국 '24년 운영경비 세부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세 목	'24년도 예산
계	총 계	1,188
항공기사고조사및장비유지	소 계	823
	인건비(공무직)	55
	운영비(수용비, 공공요금, 임차료)	435.4
	여비(국내여비, 해외업무및교육여비)	140.1
	업무추진비	2
	용역비(일반연구비)	68
	민간이전(고용부담금)	10
	기타유형자산(자산취득비)	112
철도사고조사체계구축	소 계	171
	운영비(수용비, 공공요금, 임차료)	81
	여비(국내여비, 해외업무및교육여비)	40
	용역비(일반연구비)	40
	기타유형자산(자산취득비)	10
기본경비	소 계	13
	운영비(특근매식비, 기타운영비)	9
	직책수행경비	4
기본경비(비총액)	소 계	181
	운영비(일반수용비, 공공요금, 임차료)	173.6
	여비(국내여비)	2.1
	업무추진비	5.3

자료: 국토교통부